

혼인 신청서

본당 사제 귀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혼인 희망 일시	

신 랑		신 부
	성 명	
	세 레 명	
	생 년 월 일	
	출 생 지	
	현 주 소	
	연락처(휴대 전화, e-mail 등)	
	종 교	
	소 속 본 당	
	직 업	
	부(父)의 성명, 세레명	
	모(母)의 성명, 세레명	
수료(), 미수료()	혼인교리 이수 여부	수료(), 미수료()

저희 두 사람은 천주교회에서 혼인성사(또는 관면 혼인)를 받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년 월 일

신랑 성명 _____ 세레명 _____ 인

신부 성명 _____ 세레명 _____ 인

* 민법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808조).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교회법 제1067조에 따른 필수 서식)

성 사 혼	
관 면 혼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은 동석할 수 없다. 이 진술서는 가장 중요한 혼인 문서로서, 사제가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를 각각 따로 만나 작성해야 하며, 타인에게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

당사자의 서약: 당신은 천주교회에서 물어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하느님 앞에 서약합니까? _____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

1.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성 별: _____
출생지: _____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2. 부(父)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종교: _____
모(母)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종교: _____
부모의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부모님이 이 혼인을 승낙하셨습니다습니까? _____

3.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_

(1)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_____

세례를 받은 경우 교구 본당 세례일: 년 월 일

(2) 타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경우 교회명 세례일: 년 월 일

(3) 천주교회에서 세례(또는 천주교회로 개종)를 준비 중입니까? _____

4. 이 혼인은 당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입니까? _____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시키는 것입니까?(교회법 제1103조) _____
5. 혼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자녀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교회법 제1055조 1항; 제1096조) _____
6. 당신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습니까?(교회법 제1055조 1항; 제1056조; 제1125조 3호) _____
7. 천주교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며,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절대로 재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교회법 제1056조; 제1085조) _____
8. 당신은 혼인할 사람과 친족(혈족 또는 인척) 관계입니까?(교회법 제1091-1094조; 민법 제809조; 제815조) _____
9. 신자가 교회의 관면(허가) 없이 천주교회의 신자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혼인 무효: 교회법 제1086조; 혼인 금지: 교회법 제1124조) _____

타 교파 혼인에 대한 허가나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위한 서약서

(교회법 제1086조; 제1124-1126조)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

신자인 배우자: 당신의 배우자가 비록 천주교회의 신자는 아닐지라도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혼인한 후에도 변함없이 굳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_____

신자 아닌 배우자: 당신의 배우자가 혼인한 후에도 천주교회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_____

10. 당신은 전에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교회법 제1085조) _____

혼인한 일이 있는 경우

전 배우자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혼인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혼인 신고 여부: _____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이혼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교회법상 혼인 무효 여부: _____

* 만일 과거에 여러 차례 혼인한 일이 있다면 각각의 혼인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을 조사할 것.

11.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전에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 _____

* 혼인한 일이 있다면 상대방 진술서에 자세히 기록할 것.

단순 유효화혼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었다면, 아래의 12-15항을 생략할 수도 있다.

12. 당신에게 부부의 선의과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문제가 되는 성적인 결함이 있습니까?(교회법 제1084조)

13. 당신에게 상대방이 모르는 신체적, 정신적 악성 질병이 있습니까?(교회법 제1098조; 민법 제816조)

14. 이 혼인에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교회법 제1102조)

15. 당신은 혼인식이 끝나면 국가법대로 혼인 신고를 하겠습니까?(민법 제812조)

16. 이 혼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위의 진술과 서약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진술인 성명:

세례명 _____인

천주교 _____교구 _____본당

질문 사제 성명: _____세례명: _____인

혼인관계증명서 확인과 기록 사항

* 주의: ① 주민등록등본으로는 혼인 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음.

② 단순 유효화혼일 경우에도 신랑과 신부 모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확인할 것.

③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부사항증명서’는 이전 혼인과 이혼의 모든 과정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전체 관계가 드러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혼인의 ‘전체관계증명서’라는 서식은 따로 없으므로, ‘일부 사항 증명’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전 6개월 이내의 것인가? 발행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혼인 당사자의 성명과 생일(신원)이 진술과 일치하는가? _____

3. 혼인한 사실이 있는가? _____ 또 진술과 일치하는가? _____

- 혼인했던 배우자의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 혼인 신고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이혼 신고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사망 신고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혼인 공시

*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신분에 관하여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인 공시를 해야 한다(교회법 제1067조).

신 랑

성 명 _____ 세례명 _____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주 소 _____

소속 본당 _____ 교구 _____ 본당 _____

부(父)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의 남

모(母)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신 부

성 명 _____ 세례명 _____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주 소 _____

소속 본당 _____ 교구 _____ 본당 _____

부(父)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의 녀

모(母)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혼인 일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혼인 장소 : _____

위의 두 사람이 혼인하면 안 되는 어떠한 사정을 아시는 분은 곧 주임 사제나 교구 직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1069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교구 _____ 본당 주임 사제

혼인 장애 관면서

(교회법 제37조; 제74조)

	신	랑	신	부
성 명				
세 레 명				

본인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0-111조에 따라 위의 두 사람이 혼인할 수 있도록, 아래에 기재하는 사항을 관면/허가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에 √표를 하시오.)

1. 미신자 장애 관면(교회법 제1086조)..... □

2. 타 교파 혼인에 대한 허가(교회법 제1124조)..... □

* 우리나라에서는 동방 정교회와 성공회의 세례가 인정되므로, 동방 정교회나 성공회 신자의 혼인은 타 교파 혼인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기타 다른 교파의 세례는 본당 신부가 그 유효성을 검증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타 교파 혼인 허가를, 무효한 경우에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해 주어야 한다.

3. 기타 장애(교회법 제1089조 유괴 장애, 제1091조 혈족 장애, 제1092조 인척 장애, 제1093조 내연 관계 장애, 제1094조 양자 장애 등으로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하는 특별한 경우)

관면의 사유(실례는 뒷면 참조):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관면/허가를 위한 참조 사항

권한: 사제가 관면/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0-111조에 기록되어 있다(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미신자 장애 관면과 타 교파 혼인에 대한 허가이다).

관면/허가의 형식: 관면/허가한다는 사제의 의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관면이 외적 법정에서 유효하려면, 사제가 해당되는 장애와 관면 또는 허가 사유를 이 관면서에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관면/허가의 사유: 혼인 장애를 유효하게 관면/허가하려면, 장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기에 비길 만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혼인 장애를 관면/허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 몇 가지를 실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비신자가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준비하는 경우
2.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교회법 제1080조 2항; 제1156조 1항)하는 경우
3. 그 지역에 가톨릭 신자가 적을 경우
4. 관면/허가를 거절하면, 사회 예식이나 다른 종교 예식으로 혼인하거나 아무 예식도 없이 동거할 위험이 있는 경우
5. 전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교육에 유익이 되는 경우
6. 혼인 준비를 이미 완료한 경우(교회법 제1080조 1항)
7. 관면/허가하는 것이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에게 영신적 이익이 되는 경우

관면/허가의 조건: 타 교파 혼인에 대한 허가나 미신자 장애를 관면하기에 앞서 가톨릭 신자는 신앙을 버리게 될 모든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각오를 선언해야 하며, 자녀들을 천주교회에서 세례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교회법 제1125조 1호).

미신자 배우자에게는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가 서약한 약속과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한다(교회법 제1125조 2호).

혼인 통지서

(교회법 제1121조; 제1122조)

수신 : 세례 본당

세례 교구청

교적 본당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성 별: _____

세례 번호: _____ 교구 본당 권(년) 호 년 월 일

혼인 번호: _____ 교구 본당 년 호 년 월 일

배우자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주례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교적: _____ 교구 본당 구역 반 호(교적상 세대주: _____)

교적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아래의 해당 사항을 세례성사 대장에 기재하십시오.

1. 성사혼 2. 관면혼 (두 혼인 중 반드시 하나 표시)

1. 단순 유효화혼 2. 바오로 특전혼 3. 근본 유효화혼 4. 혼중혼 (해당 사항 표시)

직인 _____ 년 월 일 교구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인

* 혼인 통지서를 받은 주임 사제는 세례성사 대장 또는 교적에 기재한 후, 아래의 혼인 통지서 접수 확인서(회신용)를 기록하여 절취하지 말고 본양식 그대로 반송하여야 한다.

* 이 확인서를 받으면 해당 혼인 문서와 함께 혼인 문서 봉투에 보관하여야 한다.
교구청에서는 회신하지 않는다.

혼인 통지서 접수 확인서(회신용)

존경하는 신부님,

귀 본당에서 보내 주신 혼인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신랑: _____ 세례명: _____

신부: _____ 세례명: _____ 의

혼인 사실을 세례성사 대장 또는 교적 에 기록하였습니다.

직인 _____ 년 월 일 교구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인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교회법 제1114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4항 참조)

본인은

신랑 _____ (세례명 _____)와

신부 _____ (세례명 _____)의 혼인이

소속 본당 사목구가 아닌 _____ (성당, 경당)에서

이루어지도록 허가함.

_____ 년 월 일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 본 허가서는 가톨릭 신자인 혼인 당사자들의 교적이 있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작성한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각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작성한다. 같은 교구 내에서라도 혼인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 혼인을 거행할 때에는, 혼인 형식의 적법성을 위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소속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인 주례권 위임서*

(특별 위임: 교회법 제1111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3항 참조)

본인은, 본인의 관할권 내에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에 이루어지는

신랑 _____ (세례명 _____)와

신부 _____ (세례명 _____)의 혼인에 대한 주례권을

_____ 교구 소속(또는 _____ 수도회 소속) _____에게 위임함.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 본 주례권 위임서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작성한다.

혼인을 주례할 권한은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다(교회법 제1108조; 제1109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제1항 참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2항에 따라, 같은 교구 소속 사제에게는 주례권 위임이 필요 없으나, 타 교구 소속 사제(부제) 또는 혼인이 거행되는 교구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수도회 소속 사제가 혼인을 주례할 경우, 혼인의 유효성을 위하여, 혼인 거행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혼인 증인의 확인서

(교회법 제1108조)

신랑 _____ (세례명 _____)와

신부 _____ (세례명 _____)는

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혼인하였음을 증언합니다.

_____ 년 월 일

증인 1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생년월일: _____ 성 별: _____ 본당: _____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증인 2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생년월일: _____ 성 별: _____ 본당: _____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바로로 특전을 위한 진술서

(Processus Summarius Extra-judicialis, 재판 외 약식 소송 진술서)

— 교회법 제1143 - 1150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8조 1항 —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은 동석할 수 없다. 이 진술서는 가장 중요한 혼인 문서로서, 사제가 직접 혼인 전에 배우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작성해야 하며, 타인에게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 이 진술서를 작성하면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의 서약: 당신은 천주교회에서 물어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하느님 앞에 서약합니까? _____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

1.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성 별: _____

출생지: _____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2. 부(父)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종교: _____

모(母)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종교: _____

부모의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부모님이 이 혼인을 승낙하셨습니까? _____

3.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경우 _____ 교구 _____ 본당 세례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타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경우 교회명 _____ 세례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준비 중입니까? _____

4. 전 혼인에 대한 질문

(1) 전 배우자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성명: _____

그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_

그분의 나이가 현재 몇 세입니까? _____

(2) 그분의 부모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부(父)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모(母)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3) 그분과 언제 혼인하셨습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혼인 생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그분과 같이 살았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__

어떤 식(현대 혼례, 전통 혼례, 타 종교 예식, 동거)으로 혼인하셨습니다? _____

전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_____

국가법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_____

(4) 전 배우자와 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_____

당신과 혼인하기 전에 그분이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_____

당신과 혼인한 후에 그분이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_____

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까? _____

그분은 당신과 혼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일이 있었습니까? _____

그분은 당신과 헤어진 후 다시 혼인하셨습니다? _____

그분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_____

연락처: _____

모른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까? _____

그분의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의 성명과 주소는?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5) 바오로 특전을 얻으려면, 전 배우자에게 ㉠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또는 ㉡ 하느님을 모독하지 않고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_____

당신은 전 배우자와 현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 _____

(만일 과거에 여러 차례 혼인한 일이 있다면 각각의 혼인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을 조사할 것)

5. 현재의 혼인에 대한 질문

(1) 현재의 배우자의 성명과 세례명은 무엇입니까?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그분과 동거 또는 혼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_____

혼인 신고는 언제 하였습니다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그분은 당신과 혼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 _____

(2) 교회의 승낙을 받고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하면 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현재의 배우자와의 혼인이 완전한 혼인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_____

(3) 천주교회의 신자가 아닌 배우자와 혼인할 때 관면을 얻기 위한 서약서

(교회법 제1086조; 제1124조; 제1126조)

당신의 배우자가 비록 천주교회의 신자는 아닐지라도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혼인한 후에도 변함없이 굳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_____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

위의 진술과 서약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진술인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①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질문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①

혼인관계증명서 확인과 기록 사항

- * 주의: ① 주민등록등본으로는 혼인 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음.
② 단순 유효화혼일 경우에도 신랑과 신부 모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확인할 것.
③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부사항증명서'는 이전 혼인과 이혼의 모든 과정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전체 관계가 드러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혼인의 '전체관계증명서'라는 서식은 따로 없으므로, '일부 사항 증명'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전 6개월 이내의 것인가? 발행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혼인 당사자의 성명과 생일(신원)이 진술과 일치하는가? _____
3. 혼인한 사실이 있는가? _____ 또 진술과 일치하는가? _____
 - 혼인했던 배우자의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 혼인 신고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이혼 신고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사망 신고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바로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

(Interpellationes, 교회법 제1144조, 대면·등기 우편 양용)

_____ 귀하

(당사자의 성명)

당신과 전에 혼인한 _____ 가 천주교회에서 세례 받고 재혼하기를 원하므로 당신의 의향을 알고자 합니다. 이 질문서는 국가법과 아무 관계 없으니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천주교회나 타 교파에서 세례 받은 일이 있습니까? _____
2. 당신은 천주교회에서 세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_____
3. 당신이 세례를 받지 않는더라도 전 배우자인 _____ 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그와 다시 화목하게 부부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_____

(등기 우편 질문 시) 당신이 30일 안으로 회답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가 천주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진술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진술인 성명: _____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사제의 위임으로 대답을 증인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받은 경우 두 증인의 성명 증인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직인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등기 우편으로 문의할 때: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표가 붙은 회신용 봉투를 질문서와 함께 동봉해야 한다.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

(재판 외 약식 소송)

사제는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언론 기사, 질문서, 증언서, 기타 모든 증서를 수집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기록한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에 표를 하시오.)

- 1.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 결과, 특전을 적용할 수 있다.....
- 2.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 회신이 정한 기일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 3.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이 (1) 불가능하다.....
(2) 필요 없다.....

관면 / 허가와 선고

- 1. 본인은 바오로 특전 대상자의 전 배우자인 _____에게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 자체에 대한 관면을 부여함.....
- 2. 혼인할 배우자가 신자가 아닌 경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관면/허가함
(1) 미신자 장애 관면.....
(2) 타 교파 혼인에 대한 허가.....
본인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8조에 따라 _____에게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선고한다.....

따라서 { 신랑: _____ 세례명: _____ 두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신부: _____ 세례명: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직인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분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사망 추정을 위한 조사서

(Investigatio de Praesumptione Mortis)

— 교회법 제1707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9조 —

이 조사서는 국가나 교회의 공식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망 추정 선언을 통하여 사망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증언자의 서약: 당신은 _____의 죽음에 대하여 천주교회에서 물어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없이 증언할 것을 하느님 앞에 서약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

증언자의 신원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성 별: _____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사망자와의 관계: _____

사망 사실에 대한 증언

- (1) 그분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까? _____
- (2) 목격 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목격 장소: _____
- (3) 목격은 못 했어도 그 사망을 알게 된 경위 _____
- (4) 행방에 관한 언론 기사나 실종 신고(민법 제22-30조; 부재 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가 있었습니까? _____
- (5) 그분이 사망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_____
- (6) 필요한 추가 증언 기록: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증언자 성명: _____ 세례명: _____인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인



사망 추정 신고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성별: _____
사망 추정일: _____	년 월 일

비록 국가나 교회의 공식 사망 증명서는 없더라도, 진술자의 증언에 따라
본인은 위 사람의 사망이 확실하다고 신고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

(Processus summarius extra-judicialis pro declaratione nullitatis matrimonii ob carentiam formae canonicae)

— 「혼인의 존엄」, 제297조 2항과 제5조 3항; 주교회의 1972년 추계 정기 총회 결정;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20조 —

이 약식 소송을 위한 진술서는 교회법(제1108조; 제1117조)에 따른 혼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에 무효가 된 혼인의 무효 선고를 위해서 작성한다.

당사자의 서약: 당신은 천주교회에서 물어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하느님 앞에 서약합니까? _____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

당사자의 신원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세례(또는 개종)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생년월일: _____ 성 별: _____

출생지: _____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혼인 사실에 대한 질문

(1) 언제 혼인하였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어떤 식(현대 혼례, 전통 혼례, 타 종교 예식, 동거)으로 혼인하였습니까? _____

(3) 교회법대로 혼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4) 배우자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현재 나이: _____ 종교: _____

(5) 배우자의 출생지: _____

(6) 혼인 신고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이혼 여부: _____

(7) 이혼의 사유: _____

위의 진술과 서약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진술인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혼인 무효 선고서

본인은 위의 서약과 진술에 따라 _____ 와 _____ 의 혼인이, 교회법에 따른 형식을 갖추지 않았음이 확실하므로, 교회법상 무효임을 선고한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직인

_____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

(Sanatio in Radice,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된 권한)

— 교회법 제1161-1165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23조 —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은 동석할 수 없다. 이 진술서는 가장 중요한 혼인 문서로서, 사제가 직접 혼인 전에 배우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작성해야 하며, 타인에게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 이 진술서를 작성하면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의 서약: 당신은 천주교회에서 물어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하느님 앞에 서약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

1.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성 별: _____
출생지: _____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2. 부(父)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종교: _____
모(母)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종교: _____

3. 당신은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_____
세례를 받은 경우, 교구: _____ 본당: _____ 세례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4. 당신은 현 배우자와 혼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

혼인한 일이 있는 경우

전 배우자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혼인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혼인 신고 여부: _____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이혼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교회법상 혼인 무효 여부: _____

5. 당신의 혼인 사정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6. 현재의 혼인에 대한 질문

(1) 배우자의 성명과 세례명은 무엇입니까?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2) 그분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_____

그분의 생년월일은? _____ 년 월 일

그분의 부모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부(父)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모(母)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까? _____

혼인 신고(또는 혼인식) 일자: _____ 년 월 일

(3) 배우자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_

그분은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_____

세례를 받은 경우, 교회명: _____

세례일: _____ 년 월 일

(4) 현재의 배우자는 당신과 혼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 _____

혼인한 일이 있는 경우

전 배우자의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혼인일: _____ 년 월 일 혼인 신고 여부: _____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이혼일: _____ 년 월 일

교회법상 혼인 무효 여부: _____

(5) 현재의 배우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6) 현재의 배우자와 교회법대로 혼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_____
- (7)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사제 앞에서 교회법대로 혼인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_____
- (8) 이 혼인은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입니까?
- _____
- (9) 두 사람은 혼인 당시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부부 생활을 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 _____
- (10) 두 사람은 지금도 합법적인 부부로서 죽을 때까지 부부 생활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_____
- (11) 혼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자녀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교회법 제1055조 1항; 제1096조)
- _____
- (12) 신자가 교회의 관면(허가) 없이 천주교회의 신자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혼인 무효: 교회법 제1086조, 혼인 금지: 교회법 제1124조)
- _____

타 교파 혼인에 대한 허가나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위한 서약서

(교회법 제1086조; 제1124조; 제1126조)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

당신의 배우자가 비록 천주교회의 신자는 아닐지라도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혼인한 후에도 변함없이 굳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_____

또한 현재의 배우자도 이와 같은 당신의 서약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_____

- (13)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까? _____ 자녀 수는? _____ 명
- (14) 당신은 배우자와 친족(혈족 또는 인척) 관계입니까?(교회법 제1091-1094조; 민법 제809조; 제815조)
- _____
- 친족(혈족 또는 인척) 관계인 경우 _____ 관계: _____

(15)당신에게 부부의 선의과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문제가 되는 성적인 결합이 있습니까?(교회법 제1084조) _____

(16)당신은 배우자가 모르는 신체적, 정신적 악성 질병이 있습니까?(교회법 제1089조; 민법 제816조)

(17)당신의 배우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악성 질병이 있습니까? _____

(18)혼인의 근본 유효화가 되는 순간부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이 완전한 혼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위의 진술과 서약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진술인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직인

질문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혼인관계증명서 확인과 기록 사항

- * 주의: ① 주민등록등본으로는 혼인 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음.
② 단순 유효화혼일 경우에도 신랑과 신부 모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확인할 것.
③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부사항증명서’는 이전 혼인과 이혼의 모든 과정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전체 관계가 드러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혼인의 ‘전체관계증명서’라는 서식은 따로 없으므로, ‘일부 사항 증명’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전 6개월 이내의 것인가? 발행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혼인 당사자의 성명과 생일(신원)이 진술과 일치하는가? _____
3. 혼인한 사실이 있는가? _____ 또 진술과 일치하는가? _____
 - 혼인했던 배우자의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 혼인 신고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이혼 신고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사망 신고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존경하는 교구장님,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청하는 당사자의 혼인 무효 사실과 근본 유효화의 사정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이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청원합니다.

1. 신랑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신부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2. 혼인 무효 사유:

3. 당사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혼인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정: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직인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본당
주임 사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인

판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상의 장애에 따른 무효 혼인은 그 장애가 소멸 되었을지라도 교구 직권자가 근본 유효화를 수여할 수 없다(교회법 제1165조 2항).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교구청 제출 서류

1.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특6호)
2. 청원자의 세례 증명서
3. 배우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2호)와 세례 증명서
4. 무효 혼인이 천주교회에서 거행된 경우, 보존된 혼인 문서 일체
5. 청원자와 현 배우자의 혼인 신고가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6개월 이내)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혼인은 근본 유효화되지 않는다.)
6. 사제의 건의서

* 교구청에서는 이상의 서류를 검토, 확인, 서명한 후 혼인성사 대장이 있는 본당에 돌려주어 보관하게 한다.

주의

1. 근본 유효화된 혼인을 혼인성사 대장에 기록하되 혼인 증인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혼인일에는 근본 유효화된 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교구명, 연도, 번호를 적는다.
2. 혼인성사 대장에 “근본 유효화”라고 기재한다.
3. 세례성사 대장에도 이 혼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

(Sanatio in Radice in Forma Gratiiosa)

— 교회법 제1161-1165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23조 —

이 인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교구청에 보관하고, 1부는 혼인 문서 봉투에 넣어 본당에서 보관한다.

교구청 보관용 원본

혼인성사 대장 본당 보관용 사본 제 _____ 년 _____ 호

혼인의 근본 유효화

	신	랑	신	부
성 명				
세 레 명				

현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청원자의 소속 본당: _____

혼인 거행일 또는 혼인 신고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혼인의 무효 사유: _____

위 두 사람의 혼인에 관한 교회법적 혼인 형식을 관면하고 혼인을 근본 유효화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천주교 _____ 교구

교구 직권자 _____ 세례명: _____ 인